
2020년도 제4차 (서면)이사회

1. 의결사항

- 제1호의 안 :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- 제2호의 안 : 취업규정 개정(안)

2020. 12. 29 (화)

보고번호	제 1 호
년 월 일	2020년 12월 29일

의
결
사
항

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

1. 의결주문

-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사유

-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확정코자 이사회 부의 함.

3. 주요내용

-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내외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고,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‘21년도 사업실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
- 중소기업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맞춤형 인증서비스를 지원하고, 핵심인증고객 집중관리를 통해 목표달성 노력
- 포스트 코로나를 대응·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대면 심사·교육시스템 구축

4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
- 별첨 :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(안) 1부. 끝.

보고부서	경영지원팀
제출연월일	2020년 12월 29일

보고번호	제 2 호
년 월 일	2020년 12월 29일

의
결
사
항

취업규정 개정(안)

보고부서	경영지원팀
제출연월일	2020년 12월 29일

1. 의결주문

- 취업규칙 개정(안)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2. 제안사유

- 우리원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전직원 대상 건강진단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, 건강진단 후 피로누적으로 인한 업무복귀 부담 경감을 위한 노측의 규정개정 의견 제안
 - * ‘20년도 하반기 노사협의회 노측 제안(‘20.10.22)
- 당일 검진피로에 따른 업무능률 저하와 근로자 피로회복을 위하여 노측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
 -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건강검진 당일 ‘공가’를 부여하기로 합의 ‘20년도 하반기 노사협의회(‘20.10.22)

3. 주요내용

현 행	개 정 (안)
<p>제 63 조 (공가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공가를 허가한다.</p> <p>1. 병역검사, 예비군훈련, 검열점호 또는 민방위훈련이 있는 때</p> <p>2. 공무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소환될 때</p> <p>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</p> <p>4. 천재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</p> <p>(신설)</p>	<p>제 63 조 (공가)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공가를 허가한다.</p> <p>1. 병역검사, 예비군훈련, 검열점호 또는 민방위훈련이 있는 때</p> <p>2. 공무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소환될 때</p> <p>3.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</p> <p>4. 천재지변·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</p> <p>5. 제90조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진행할 때</p>

4. 시행일자 : 2020. 1. 1.

5. 참고사항

- 근거규정 : 이사회 운영규정 제7조